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04. 8. 3

전 라 북 도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김제시 · 완주군 · 부안군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의)	2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12
제 5 조 (사업시행범위)	13
제 6 조 (무상사용기간)	13
제 7 조 (소유권의 귀속)	14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위험의 부담)	14
제 9 조 (사업기간의 연장)	15
제 10 조 (출자자 및 출자자의 변경)	15
제 11 조 (보험가입)	16
제 12 조 (업무분장)	16
제 1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16
제 14 조 (협약의 성실히행)	17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5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7
제 16 조 (총사업비의 변경)	17
제 17 조 (자본금 납입)	18

제 4 장 실시절차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19
제 19 조 (보상업무)	19
제 20 조 (공사기간)	19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0
제 22 조 (공정보고)	20

제 23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20
제 24 조 (유물의 발견)	21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22
제 26 조 (사업이행지체)	22
제 27 조 (공사의 도급)	23
제 28 조 (기성검사)	23
제 29 조 (민원처리)	24
제 30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4
제 31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5
제 32 조 (공사책임감리)	25
제 33 조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	25
제 34 조 (시설투자의 완료)	26
제 35 조 (시설의 적기 준공 및 관리)	26
제 36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26

제 5 장 수익률 및 사용료

제 37 조 (사업수익률)	27
제 38 조 (추정 처리량 및 추정 사용료 수입).....	28
제 39 조 (기준사용료)	28
제 40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28
제 41 조 (사용료의 조정)	29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관리비)	30
제 43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시행).....	31
제 44 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31
제 45 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32
제 46 조 (운영실적 보고)	32
제 47 조 (기존처리시설의 위탁운영기간동안의 운영관리 등).....	33

제 7 장 주무관청들의 지원

제 48 조 (당해주무관청의 재정지원)	34
제 49 조 (건설분담금 지급)	34
제 50 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	35
제 51 조 (과도한 환차익 환수)	36

제 52 조 (전문기관에 의한 확인 및 검토)	36
제 53 조 (주무관청들의 비재정적 지원).....	37

제 8 장 불가항력 및 위험분담

제 54 조 (불가항력)	38
제 55 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 제기)	39
제 56 조 (불가항력 발생시의 조치)	39
제 57 조 (위험배분 원칙)	39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0
제 59 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1
제 60 조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	42

제 9 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제 61 조 (중도해지)	43
제 62 조 (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44
제 63 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44
제 64 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45
제 65 조 (금융 미완결 등에 의한 중도해지)	45
제 66 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46
제 67 조 (상호 합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	46
제 68 조 (통합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46
제 69 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47
제 70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49
제 71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50
제 72 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50
제 73 조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50
제 74 조 (해지시 지급금액의 조정)	51
제 75 조 (매수청구권)	51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52
제 77 조 (분쟁금액)	52
제 78 조 (중 재)	52
제 79 조 (합의관할)	53

제 11 장 비밀유지 등 기타사항

제 80 조 (비밀유지)	53
제 81 조 (협약의 변경)	53
제 82 조 (권리의무의 양도)	54
제 83 조 (협약의 수익자)	54
제 84 조 (일부무효)	55
제 85 조 (적용법규)	55
제 86 조 (대체자의 선정)	55
제 87 조 (통 지)	56
제 88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들의 협조)	56
제 89 조 (협약준수 의무)	57
제 90 조 (완전합의)	57
제 91 조 (언 어)	58
제 92 조 (문서의 우선순위)	58
제 93 조 (해 석)	58
제 9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8
제 95 조 (협약의 효력)	59
제 96 조 (경과조치)	59

별첨 목록

61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이하 “주무관청들” 이라 함)과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는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2004년 08월 03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들과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별첨 1(본사업의 범위)과 같으며, 본 사업시설의 명칭은 당해주무관청별로 아래와 같다.
 1. 군산권역: 옥서하수처리장, 회현하수처리장, 대야하수처리장, 임피하수처리장, 서수하수처리장
 2. 익산권역: 익산(개선)하수처리장, 익산북부하수처리장, 함열하수처리장, 금마하수처리장, 금강분뇨처리장.
 3. 정읍권역: 정읍(개선)하수처리장, 신태인하수처리장, 정읍분뇨축산폐수처리장.
 4. 김제권역: 김제하수(개선 및 증설포함)처리장, 만경하수처리장, 죽산하수처리장, 금구하수처리장, 금산하수처리장, 김제분뇨처리장, 김제축산폐수처리장.
 5. 완주권역: 삼례(개선)하수처리장, 소양하수처리장, 구이하수처리장, 고산하수처리장, 삼례분뇨축산폐수처리장.

6. 부안권역: 부안하수처리장, 계화하수처리장, 부안분뇨처리장.

제 2 조 (정의)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중평균상환환율 :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매 사업년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각 상환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당해연도 총 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2. 가중평균차입환율 :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각 외화차입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총 외화차입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3.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업자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말한다.
4. 개선하수처리시설: 기존처리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 또는 협조받아 모두개선 및 운영하게 될 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5.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통합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법률 제06956호(개정 2003.7.29)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한다.
7. 건설분담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환 보조금의 하나로서 본 협약 제49조(건설분담금 지급) 및 별첨4(건설분담금지급 일정)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2001년 2월 1일자 기준 불변가격인 금액을 말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법률 제06938호(개정 2003.8.26)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9.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제8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고정사용료 : 처리방류량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에게 청구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로 2001.2.1.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별첨5(추정사용료수입)에 명시된 사용료를 말한다.
11. 공사기간 : 본 협약 제21조(공사의 착수)에 의한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의 준공 확인신청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공사도급계약 : 본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 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13. 공정거래법 : 대한민국 법률 제6705호(개정 2002.8.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말한다.
14. 과도한 환차손 : 매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상환환율이 가중평균차입환율보다 2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그 초과 상승분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당해 연도의 순외환손실액을 말한다.
15. 과도한 환차익 : 매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상환환율이 가중평균차입환율보다 2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그 초과 하락분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당해 연도의 순외환이익액을 말한다.
16.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7.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06836호(개정2002.12.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을 말한다.
18. 금융완결 : 건설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차입금 인출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9. 기존처리시설: 본 협약 체결전부터 당해주무관청들이 시공 또는 운영하여 오던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들로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들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및 운영설비 일체를 말한다.
20. 기준사용료 : 본 협약에서 정한 2001년 2월 1일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말한다.

21. 기준이자율 :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율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0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2.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3. 기타 수입 :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을 말한다.
24. 단가작성기준일 : 본 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의 단가를 적용한 날로서 2001년 2월 1일을 말한다.
25.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기타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약정 또는 협정을 말한다.
26. 당해주무관청: 개별치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말한다.(이하에서 집합적으로는 “당해주무관청들”, 개별적으로는 “당해주무관청”이라 함)
27. 당해주무관청의 장: 각 당해주무관청의 장인 군산시의 시장, 익산시의 시장, 정읍시의 시장, 김제시의 시장, 완주군의 군수, 부안군의 군수를 말한다.
28. 대리은행 :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9.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0.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통합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하거나 부분준공,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축기간만큼은 위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1.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 기준 일인 2001년 2월 1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의 예

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32.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06916호(개정'03.5.2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3.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928호(개정'03.2.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한다.
3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3-2호(2003.5.17)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5. 반기 : 매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36. 법령 :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조약, 협약, 고시 또는 법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 조례, 명령 혹은 기타 협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정부의 지침 등의 조치를 말한다.
37. 변동사용료 : 처리방류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에게 청구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38. 보건 및 안전 규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기준, 관행을 말한다.
39.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중 당해주무관청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40. 본 사업 :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제2항에 특정된 본 시설의 건설 및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41. 본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통합운영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설계기간, 공사기간 및 위탁운영기간 포함) 및 통합운영기간으로 구분된다.
42. 본 사업부지 : 별첨 1(본 사업시설의 범위)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한다.
43. 본 사업수입 :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말한다.
44. 본 사업시설 : 본 시설, 기존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45. 본 시설 적정가치 : 본 협약 제70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본 시설의 가치를 말한다.
46. 본 시설: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별첨 1-1(설계 및 시공)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설치, 증설 또는 개선하게 될 개별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및 운영설비 일체를 말한다.
47.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한다.
48. 부분준공 : 본 시설 중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준공예정일 이전에 일부 개별처리시설이 준공되는 것을 말한다.
49. 부속시설 : 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할 휴게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민친화시설을 말한다.
50. 분기 :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1. 불가항력 :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 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하며, 제54조(불가항력)에 규정된 바와 같다. 또한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 및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52.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2002년 8월 1일자로 전라북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3. 사업년도 :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첫 사업년도는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운영종료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54.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55.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들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본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인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를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56. 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의 처리방류량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57.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06847호(개정'02.12.30)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58.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통계청간행물)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7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59. 순수입 : 사용료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의미한다.
60.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시설의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61. 시설물안전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06941호(개정 2003.7.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을 말한다.
62. 신설하수처리시설 : 본 시설 중 신규로 설치될 하수처리시설들을 말한다.
63.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본 협약, 사업계획서 및 협상합의사항(별첨, 부록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의 승인(단, 전라북도 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전, 향해주무관청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다)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설계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의미한다.
64. 실시설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서류 및 도면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 가. 위치도
 - 나.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 다.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라.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 마.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바. 본 사업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획서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면세에 관한 서류
 - 아. 환경성검토서
 - 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계도서
65. 영업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6. 예비비 :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67. 외화 : 해당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모든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68. 운영관리비 : 운영비용과 법인세를 합제한 금액을 말한다.
69. 운영비용 : 본 협약 별첨6(무상사용기간 중 운영비용내역)의 운영비용내역 항목으로 구분한 비용들을 합제한 금액을 말한다.
70. 운영설비 : 실험실 설비, 유지관리 및 특수공구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의미한다.
71. 원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72. 월(月) :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다음 역월의 그 숫자상의 상응 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영업일이 아닌 날에 이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익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73. 위험물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독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사람 기타 환경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기체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위해, 손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74. 위탁운영권 : 본 협약 체결 후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인계인수일로부터 통합운영개시일 전일까지 기존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해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 주는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말한다.
75. 위탁운영기간 : 기존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권이 부여되어 기존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76. 유물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되는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 유물이나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의미한다.
77.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78. 인·허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주무관청들,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

- 반 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협의를 말한다.
79. 일(日) 또는 날 : 0시에 시작하는 24시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8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대한민국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조달청 회계규정 제2200. 04-147-5호)을 말한다.
81.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82.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83. 자금차입계약(들) :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주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84. 자기자본 :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가 부담하는 자금을 말한다.
85. 재금융자금차입계약 : 건설자금용 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선되는 금융자금의 차입계약을 말한다.
86. 재무모달 : 별첨22(재무모델)에 제시된 본 사업에 대한 재무모델을 말한다.
87. 적용환율 :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해당일 매매기준을 등을 말한다.
88. 전문기관 : 회계법인, 법무법인 또는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 법률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9. 전라북도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를 말한다.
90. 전라북도지사 :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91. 정부 :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말한다.
92. 제세공과금 : 본 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부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93. 조기준공 : 본 시설 전체가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준공예정일 이전에 준공되는

것을 말한다.

94.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 민간 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내용으로서 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95. 주무관청들: 본 협약의 당사자들로 대한민국법상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말한다.
96.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착수일로부터 40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97. 준공일 : 본 시설이 제36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기재된 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당해주무관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년월일을 말한다.
98. 준공확인필증 : 제36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99. 증설하수처리시설 : 본 시설 중 기존처리시설 사업부지내에 신규로 설치될 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100. 지장물 : 본 시설의 공사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유형의 지장 또는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01. 차입금: 총선순위채무는 [{1-협약으로 정한 최소자기자본(준자본형태의 후순위채무포함)비율} * 총민간투자비]를 한도로 인정되며, 총선순위채무에 대한 재차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연도별 총선순위채무는 당초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연도별 대출잔액과 차입조건을 한도로 인정된다. 다만, 당해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총선순위채무에 대한 재차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02. 처리장시설 : 본 사업시설 중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하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내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103. 처리구역기반시설 : 처리구역 내의 본 사업과 관련한 상수도 인입, 하수지선관거, 하수연결관로 등 제반 공공시설 또는 공급시설,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당해주무관청이 시행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104.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05.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예비비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통합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건설자금 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06. 총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시설의 총사업비용을 말한다.
107. 총선순위채무 :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확정된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실제 조달된 차입금에서 사업시행자가 해산하는 경우 변제순위에서 열위에 서는 준자본형태의 후순위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본 협약에 따른 해지 또는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일 현재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의미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발생 이전에 상환했어야 할 원리금 미상환액과 해지의 효력발생 이후에 발생하는 위 기준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금차입계약상의 지연배상금 등은 총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기준이자율 대신 자금차입계약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108. ~~최초 사용료 : 통합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로 기준사용료 시점부터 통합운영 개시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109. 추정처리량 : 본 사업시설의 처리량으로서 본 협약 별첨9(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처리량)에 명시된 처리용량을 말한다.
110. 추정사용료수입 : 별첨 5(추정사용료 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기간 중의 매 사업연도의 본 사업시설의 추정사용료 수입액을 말한다.
111.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자 들을 의미한다.
112. 출자지분 : 각 출자자의 지분을 말한다.
113. 통합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본 시설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조기준공 확인필증을 포함)을 교부받고 통합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하여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114. 통합관리운영권 :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당해주무관청들이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 115. 통합운영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무상사용기간을 포함)을 의미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 제6조(무상사용기간)의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116. 하도급법령 : 대한민국 법률 제06893호(개정2003.5.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말한다.
- 117. 하수도법 : 대한민국 법률 제06841호(개정2002.12.30) 하수도법을 말한다
- 118.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들과 본 협약으로 특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② 본 협약 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이 있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③ 감리자, 대주단, 사업시행자, 시공자, 주무관청들의 장 기타 본 협약 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들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운영권을 설정, 부여한다.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 ① 주무관청들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는 권한

2. 제1호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시설의 준공 확인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3. 본 시설 및 본 사업부지를 통합운영기간동안 민간투자법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당해주무관청에게 사용료를 청구 및 수령하며,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 할 수 있는 권한
 4.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영위
- ② 당해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운영관리비를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은 사업기간동안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사업시행범위)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실시계획상의 공사내용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합운영기간 동안의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중 기존처리시설을 인수받아 위탁 운영한다. 당해주무관청은 건설기간 동안 별첨8(기존처리시설의 위탁운영시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각 기존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한 시점부터 사업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기존처리시설들의 운영을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한다.
- ③ 익산북부하수처리장(공사기간 31개월)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처리시설'로 간주하고, 준공과 관련된 사항은 '준공전 사용인가' 시설로 간주한다.

제 6 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 ② 제33조(부분 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에 의해 본 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운영개시일로부터 통합운영개시일까지 당해주무관청에게 최초사용료를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제36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조기준공한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다만 조기준공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41조(사용료의 조정) 제1항의 사용료를 조기준공일로부터 통합운영개시일까지 당해주무관청들에게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실시계획상의 준공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7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각 개별하수처리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주무관청에게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의 귀속은 제69조(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위험의 부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금융완결을 포함한 자금조달, 공사, 관리·운영 및 기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사업기간의 연장)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의 예정된 종료일 기준 12개월 전까지 본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당해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안하고자 하는 연장기간 및 해당기간동안의 시설의 관리 운영계획 등 본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제반조건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당해주무관청은 제1항의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기간 연장제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당해주무관청이 제1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제안의 수락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익배분 약정 등 본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본 협약에 적절히 반영, 수정하여 협약을 갱신하기로 한다.

제 10 조 (출자자 및 출자자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전북환경주식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그 지분은 별첨10(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동안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객관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자자인 회사의 계열회사간 출자자 변경 또는 지분변경인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③ 건설기간동안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출자자 변경 및 지분변동내역 등을 변경, 매각, 양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출자자 또는 해당 출자자의 지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전라북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건설 및 본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첨17(보험가입계획)과 같이 직접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당해주무관청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동종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보험의 조건(부보 가능한 불가항력사유 등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업무감독)

- ①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당해주무관청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시행령 35조(감독명령)규정에 의해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업무를 시행한다.

제 1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책임과 의무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14 조 (협약의 성신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의거하여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주무관청들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5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별첨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과 같이 2001년 2월 1일 불변가격기준 금196,366백만원으로 한다.
- ② 총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별첨4(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건설분담금에 해당하는 금137,457백만원을 제외한 금58,910백만원으로 한다

제 16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본조 제2항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4.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5. 법령(민간투자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본 협약 제29조(민원처리) 제1항에 정한 사업민원 또는 기타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 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7. 제19조 (보상업무)에 따른 보상비용 등의 증감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8. 기타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당해주무관청이 본 시설에 기재된 본 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 및 경비가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하수처리장 시설기준,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③ 총사업비는 연 1 회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누계액이 연간 공사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 변경할 수 있다.
-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별첨 22(재무모델)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 작성 기준일은 2001년 2월 1일로 하며, 동 일자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증감액은 제49조(건설분담금 지급)의 재정지원부담비율에 따라 별첨4(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의한 건설분담금을 증감하며, 이 경우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 조정, 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주무관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17 조 (자본금 납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첨 12(자금투입계획)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으로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약정출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은 타인자본 투입이전에 전액 선투입되어야 한다.

제 4 장 실시절차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라북도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라북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익산북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신청 및 승인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 ④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효력상실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기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보상업무)

- 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당해 주무관청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토지매수업무 등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0개월로 한다.

- ②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으로 정한 공사일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하되, 당해주무관청은 전라북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착수일을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발생, 용지보상의 지연, 설계변경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중 공사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일 7일 이전에 착수신고서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당해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공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당해주무관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공사추진현황을 보고 한다.
- ②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매월 사업시행자와 당해주무관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1월말까지 본 시설 전체 공정 및 전년도 시공 분이 표시된 설계도서,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당해주무관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간 중 본 협약체결 당시 협약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및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는 이를 즉시 당해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당해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시공자는 위험물을 제거 및 중화하거나 지장물 이설 등과 관련된 인·허가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주무관청이나 관계기관이 행하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출입, 시설의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으로 인한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처리비용은 제8장(불가항력 및 위험분담)에 따른다.
- ⑤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제20조(공사기간)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4 조 (유물의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유물 발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물을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유물발견 사실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동 유물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유물발굴은 당해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의 감독 및 참여 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처리비용은 제8장(불가항력 및 위험의 분담)에 따른다.
- ④ 협약당사자는 유물의 보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물발굴로 인한 공사이연이 초래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제20조(공사기간)에 의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총사업비(단 건설공사보험료는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보유중인 국공채,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들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들의 장은 60일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 등의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설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당해 주무관청은 제1항 기재 사업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준공일까지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지 아니한 경우(단, 부분준공의 경우는 제외)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사업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주무관청이 건설기간 중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당해주무관청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당해주무관청들이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사업이행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처리시설의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포함) 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계획으로 정한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본 시설의 준공시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공사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누적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20조(공사기간)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사업의 이행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제 27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의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 후 즉시 이를 당해주무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당해주무관청에게 통지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한 공동이행 내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책임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도급자가 본 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⑧ 당해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어떠한 면에서도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에 계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당해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8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사업시행자와 당해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제3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
 2. 시공민원 : 본 시설의 시공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의 경우는 당해주무관청이 직접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③ 본 시설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공민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작위나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수령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0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당해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1 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본 시설의 건설 및 본 사업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및 제20조(공사기간)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2. 기타 본 협약으로 위임 또는 위탁이 결정되었거나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2 조 (공사책임감리)

- ①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본 시설의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는 당해주무관청이 통지한 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다. 단, 감리전문회사 선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관련법규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현황을 협약당사자에게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감리비를 청구받은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본 시설 전체의 준공전이라도 당해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개별처리시설의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 36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부

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분준공확인신청 또는 준공전사용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검사 이후 부분준공 확인필증(또는 가사용승인서)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투자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제 34 조 (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전까지 본시설의 관리사무소, 운영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 처리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5 조 (시설의 적기 준공 및 관리)

- ① 사업시행자가 신설, 증설 및 개선하수처리시설의 부분준공이나 조기준공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하수처리를 실시계획에 따른 준공예정일 이전 또는 준공예정일에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리구역기반시설 등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처리구역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실시계획에 따른 통합운영개시 예정일까지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합운영개시예정일로부터 상기 시설들이 준비되어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조정, 사용료조정, 재정지원 등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협상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6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을 완공하기 2개월 전까지 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당해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미비사항이 보완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본 시설의 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인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시험성적서(보증수질 포함)를 첨부하여 별첨20(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서식에 의해 당해주무관청에 본 시설에 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본 시설의 최소성능기준이 충족되고 본조 제3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⑤ 당해주무관청은 준공확인 후 통합운영개시일로부터 통합운영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합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또한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위탁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권을 부여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통합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제20조(공사기간) 제1항에 규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시설을 완공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을 경우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당해주무관청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등록, 운영개시일,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준공도서를 포함한 일체서류를 작성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5 장 수익률 및 사용료

제 37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IRR)로서 6.55%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추정처리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처리시설의 추정처리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은 별첨 9(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처리량)에 제시된 연도별 추정처리량 및 별첨5(추정사용료 수입)에 제시된 2001년 2월 1일 불변가격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제 39 조 (기준사용료)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산정이 되는 기준사용료는 2001년 2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별첨 5(추정사용료수입)의 기준사용료와 같다.

제 40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협약에 따른 당월의 고정사용료를 익월 7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당해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당해주무관청은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방류되는 하수량을 계량(검침)하여 산장된 변동사용료를 익월 7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당해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당해주무관청은 동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33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인가)에 의한 기간 동안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조 제2항의 청구, 지급 및 시기의 방법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에 매월 청구하는 사용료 총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 ⑤ 당해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사용료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동 지급예정일로부터 실제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41 조 (사용료의 조정)

- ① 통합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사용료는 제39조(기준사용료)에 기준사용료 시점(2001년 2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정기적인 사용료 조정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직전사업연도 사용료에 당해 년도 직전 년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은 매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여 반영하되 1년 미만인 기간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당해주무관청은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조정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1.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의 발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조정방법으로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회차입금의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고 제50조(과도한 환차손 보전)의 규정에 따라 과도한 환차손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조정을~~ ~~합의한 경우~~
 3. 기타 당해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사업시행자는 부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 사용료 적용기준일 30일 이전까지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청구기준 등을 그 근거자료(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국내외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증가 및 사용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관련법규에 따른 사용료 제한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낮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용료 수준의 조정에 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사용료수입 감소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제6조(무상사용기간)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단,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은 사업시행자가 동

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⑦ 제5항에서 정한 협의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의 협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전문기관에 사용료 산정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이 산정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본 협약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조정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료 산정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사용료 산정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되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 ⑨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보조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문서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 리 ·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제 42 조 (운영관리비)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1년 2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금 328,470백만원으로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부문별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첨6(무상사용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 별첨 7(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운영관리비)과 같다.
- ② 각 사업연도의 경상가격기준 운영비용은 제1항의 운영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사용할 수 있다.
- ③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가 별도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감의 경우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보조금지급등의 방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당해주무관청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별첨7(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운영관리비)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용의 증감이 발생하고 당해주무관청이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 ⑤ 운영관리비는 별첨7(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운영관리비) 중의 법인세 등의 체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 43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시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제2조(정의) 제22호에서 정한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 상에 당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 수입내역 등을 표시하고 그 실적을 당해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도록 본 사업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하수도법에 의한 운영진단 등 관련법령 및 하수처리공사의 유지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당해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해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법적 방류수 수질 및 방류수 보증 수질을 초과한 경우의 규제 조치는 별첨14(성능보증수질 및 규제조치)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사업시행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은 5항의 규제조치와는 별도로 적용하며, 방류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당해주무관청의 제재조치는 별첨 14(성능보증수질 및 규제조치)의 3항 방류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규제조치에 따라 적용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를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 45 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또는 당해주무관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처리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운영, 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임 또는 유지보수계약,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상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6 조 (운영실적 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1월 31일까지 직전 사업 년도의 처리수량 및 처리수질,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당해주무관청의 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

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당해주무관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7 조 (기존처리시설의 위탁운영기간동안의 운영관리 등)

- ① 협약당사자는 협약체결이후 기존처리시설의 위탁운영시점 1개월 전부터 위탁운영개시 시점까지 1개월 동안 상호협약하여 운영인력을 투입하고, 당해주무관청과 동기간 동안 공동으로 업무 및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시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기간 연장 또는 지원요청을 할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인계인수내역을 인계인수기간동안 상호 합의하에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기간동안 미비사항을 발견시 당해주무관청에 통보하고 당해주무관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③ 법인세를 제외한 기존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은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처분비, 연료비, 보수비, 전력비, 대수선비, 상하수도비, 시설안전진단비, 제경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산정기준 중 인건비 및 제경비는 별첨16(위탁운영기간동안의 고정비내역)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 및 지급하며, 그 외의 항목들은 실비용으로 계상한다.
- ④ ~~매분기 운영계획서는 전분기 정산추정차액을 포함하여 매분기 전월말에 제출하고 당해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동 운영기간 중 대수선 사항이 있을 경우 대수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해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집행비용을 익월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정상운업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하는 경우 구두보고 또는 유선보고 후 선조치하고 사후 서면보고하며, 집행비용을 익월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 ⑥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의 청구는 매분기 운영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말에 청구하고 당해주무관청은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정산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제5항에 포함된 근거자료가 첨부된 정산자료를 분기완료이후 7일 이내 당해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당해주무관청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단 운영비용 정산차액은 이자손익 처리 없이 익월 운영비용청구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 ⑦ 운영관리관련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당해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 ⑧ 당해주무관청이 해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6항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동 지급예정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기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⑨ 당해주무관청이 기존인력에 대한 채용을 원할시 사업시행자는 적극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기존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채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⑩ 사업시행자는 당해주무관청의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정년수준의 근속연한을 보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⑪ 위탁운영기간 중 운영관리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주무관청들의 지원

제 48 조 (당해주무관청의 재정지원)

당해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3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건설분담금 및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 49 조 (건설분담금 지급)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당해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분담금은 2001년 2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137,457백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건설분담금은 별첨 4(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명시된 지급일정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2001년 2월 1일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분담금의 기성청구를 매분기말 당해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당해주무관청은 기

성청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다. 단, 각 분기별 건설분담금은 해당 분기의 기성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합운영개시일 전까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 ③ 당해주무관청은 제16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건설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한다.
- ④ 당해주무관청이 별첨 4(건설분담금 지급일정)에 따라 건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성청구 제출일 이후 30일로부터 실제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당해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른 건설분담금을 지원함에 있어 당해 건설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기타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건설분담금 지급시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50 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

- ① 당해주무관청은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환차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자금용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외화차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또는 운영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외화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 상환일정, 매 차입시기별 기준환율, 가중평균차입환율 등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합운영기간 중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의 과도한 환차손 발생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당해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과도한 환차손 발생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과도한 환차손은 매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그 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과도한 환차손을 확인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해당 환차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사용료의 인상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협약당사자간에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과도한 환차손을 재정지원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환차손액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단, 차기연도 2월말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월말 이후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적용할 이자율은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 중 재금융차입금으로 대체한 외화차입금의 원리금상환 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환차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환차손은 최초외자차입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였을 환차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환차손의 50%를 제외한 나머지의 환차손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자세로 그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차손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그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1 조 (과도한 환차익 환수)

- ①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환차익을 보게 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그 과도한 환차익의 50%를 환수하도록 한다.
- ② 당해주무관청은 과도한 환차익이 발생하고 사용료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도한 환차익 환수분을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재정지원금액으로 상계하거나 사용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거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보조금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본 조에 의한 과도한 환차익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 52 조 (전문기관에 의한 확인 및 검토)

- ① 협약당사자는 제50조 (과도한 환차손 보전), 제51조(과도한 환차익 환수), 기타 본 협약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이 전문기관의 검토 없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전

문기관을 선정하고 그 확인,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균등 부담한다.

제 53 조 (주무관청들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주무관청들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 배당금, 자본 및 원금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으로의 환전 및 국외 은행계좌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주무관청들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시설의 건설 및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주무관청들은 필요한 경우 본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④ 주무관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환경성검토 관련사항, 에너지사용계획 및 승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시설의 건설 및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 ⑤ 주무관청들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 ⑥ 주무관청들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등을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⑦ 주무관청들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들)의(재차입 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들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제 8 장 불가항력 및 위험분담

제 54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비정치적 위험 :

- 가.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
- 나. 전국적 또는 산업전반의 전국적 노동쟁의
- 다. 정부, 주무관청들의 정책,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물이나 지하지장물 및 유물의 발견,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폭발 및 화재,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 마.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 바. 보상과 관련된 사업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정치적 위험

- 가.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 정치적 폭력사태
- 나.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또는 불능
- 다. 민간투자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② 불가항력은 명백히 다음의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계 및 장비(부품 및 기타 소모품을 포함한다), 기타 설비, 또는 전력, 용수 등의 부족, 노후화, 조달지연, 고장 등
- 2. 협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및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협약당사자의 의무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 55 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 또는 협약당사자간 통지수단이 재개된 후 당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의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불가항력의 발생을 통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지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56 조 (불가항력 발생시의 조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완화 또는 치유조치를 취함에 있어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위험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7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제 57 조 (위험배분원칙)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중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어느 협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위험인 경우에는 해당 위험의 관리가 더 용이하고, 더 효율적인 협약당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은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각각의 위험분담비율 및 분담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 내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당해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으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소홀,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4.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정할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미계약(들) 등 민간사업비 조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노력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다.
7. 본 시설에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6개월 기간 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비, 차입원리금 등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해당금액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주무관청이 그러한 지급불능 및 채무불이행의 개선을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개선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 사용료 수입 등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 ③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제62조(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본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9 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당해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공사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 비목의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 등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않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3.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업무처리 등의 지연으로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단, 민원발생(사업민원 포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제60조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의 비정치적 위험에 따른다.
4. 당해주무관청이 공공 요금정책 등을 이유로 본 협약으로 정한 최초사용료 또는 조정된 사용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경우 등 당해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되는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5.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절차의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6. 당해주무관청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건설분담금, 재정지원 및 사용료를 미지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당해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사유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사업시행자의 손실분은 당해주무관청이 부담한다.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해당 사유로 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본협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63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제75조(매수청구권)에 따라 처리하거나, 당해주무관청에 보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0 조 (불가항력 및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처리)

① 불가항력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관리비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해소하되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②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착수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75%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당해주무관청이 부담한다.

③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75%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당해주무관청이 부담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사유 발생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사유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당해주무관청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공사비 및 대출금 등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대주단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금차입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장 협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제 61 조 (중도해지)

본 협약은 제68조(통합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종료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협약 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당해주무관청에 의한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자격의 박탈
2.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기한 당해주무관청의 협약 해지
3.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협약 해지

4. 불가항력으로 인한 협약의 종료
5. 협약당사자 상호협의를 의한 협약의 종료

제 62 조 (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당해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치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는 상시기간 만료일에 해지된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시설의 건설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우 등 기타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63 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치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약은 상시기간 만료일에 해지된다.

1.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본 시설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2.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3. 건설분담금, 보조금의 지급 또는 사용료의 지급 등 본 협약에서 정한 당해주무관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서면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64 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3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본 협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시설의 설계 및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2.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제 65 조 (금융 미완결 등에 의한 중도해지)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금융완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금융완결 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자금차입계약(들)이 중도해지 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체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금융이 완결되지 못한 경우 제63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금융이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제62조(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금융이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4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따라 협약당사자 중 해당 사유의 발생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66 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 ① 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10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 67 조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기간 중 언제라도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 68 조 (통합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62조(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내지 제65조(금융 미완결 등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제67조(상호협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6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위탁 및 통합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도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 6개월 전에 당해주무관청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종료와 동시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권을 당해주무관청에게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및 보수, 교체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사용

기간(20년) 동안의 대수선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다.

3. 제2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종 대수선 항목들을 본 협약 부록에 의하여 시행하고 별첨 6-1(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대수선계획)에 따라 명시된 대수선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대수선 주기는 연장할 수 있다.
4. 당해주무관청에 인계되는 본 사업시설 및 설비자산과 기타 물품은 서명된 약정서에 기록하며 무상으로 당해주무관청에 이양한다.
5. 당해주무관청은 제1호에 의한 점검 실시 후 협약종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인수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다만, 당해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반환요건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6. 당해주무관청이 통지한 거부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이의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의의 통지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장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7. 제6호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유가 치유되거나 협약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어 당해주무관청이 인수확인서를 발행할 때까지, 본 사업시설의 운영관리는 제69조 제5항을 준용한다.
8. 사업시행자는 통합관리운영권 인계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시설운영자료 및 도면, 운전매뉴얼과 교육교재를 당해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자에게 시설 운영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69 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종료시,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권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당해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여 당해주무관청에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자금차입계약(들) 등 모든 계약을 당해주무관청(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대체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일로부터 본 사업시설(건설기간 중인 경우 기성 부분 및 사업부지)은 즉시 당해주무관청에 귀속되고 본 협약에 의해 설정,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책임, 무상사용기간 등이 종료된다. 다만,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약당사자간에 기발생된 의무사항은 동 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
- ④ 본 협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는 경우 종료 또는 중도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지 직전의 사용료 청구, 수령 등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용 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자산은 당해주무관청에 대가 없이 귀속된다.
- ⑤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또는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로서 당해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통합관리운영권을 인계할 때까지 당해주무관청의 관리하에 본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과 관련한 지적재산권(환경신기술, 특허 등) 등을 당해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에게 무상사용기간동안에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인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정가치의 기술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등을 당해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⑧ 본 협약의 해지 및 종료는 그 효력 발생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 및 종료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당해주무관청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0 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 ① 당해주무관청은 제7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내지 제73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에서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총선순위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해지효과가 발생하는 날 또는 당해주무관청이 매수청구를 인정한 날(이하 “해지일” 또는 “매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정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71조 내지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치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제3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선정된 전문기관이 적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시설에 대한 투입원가(실사계획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실제 투입된 총민간투자비와 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자기차보기대수익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해지의 효력발생시까지 완료했어야 할 사업시설물의 설치 및 품질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별첨13(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토대로 하되, 해지 또는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일 현재 영업권을 포함한 잔여사용기간 또는 잔여운영기간의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상한으로 한다.
- ⑥ 전문기관에 의해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나 협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50대 50으로 부담한다.
- ⑦ 해지시 지급금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10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⑧ 당해주무관청은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1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제62조(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65조(금융 미완결 등의 의한 중도해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으로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때에는 총선순위채무, 총선순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지시점의 총민간투자비 잔액(총민간투자비를 정액으로 상각한 후 잔액)에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되는 지급금은 준공일 이후 지급일까지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 72 조 (당해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제63조(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적정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제 73 조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①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중도해지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으로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정치적 위험으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당해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제70조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제 74 조 (해지시 지급금액의 조정)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71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내지 제73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에 의거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당해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당해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5 조 (매수청구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사업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 이상 초과한 경우
3. 본 협약에 정한 당해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발생을 통보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당해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78조(중재) 또는 제79조(합의관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77 조 (분쟁금액)

- ①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은 그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8 조 (중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④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79 조 (합의관할)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 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1 장 비밀유지 등 기타사항

제 80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제 81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2 조 (권리의무의 양도)

- ①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본 협약상 권리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본 협약, 설계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보유동산이나 수입, 은행구좌, 기타 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무관청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는 당해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당해주무관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제43조(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시행)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제 83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4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5 조 (적용법규)

-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하수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협약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제 86 조 (대체자의 선정)

- ① 당해주무관청이 제62조(당해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주단과 협의하여 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지급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해지통지 이전에 당해주무관청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당해주무관청은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당해주무관청이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당해주무관청과 동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서상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 사업시행자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유지보수, 운영 및 사용료 수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자산, 재산 및 권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함이 없이 그리고 제88조(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당해주무관청의 협조) 제2항에서 허용된 담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

보도 설정함이 없이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 ⑤ 대체자는 본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본 협약당사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보수 또는 운영과 관련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의 다양한 자산, 권리 및 의무가 대체기관에 귀속,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책임, 부채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당해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른 대체의 후속조치로의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체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즉시 본 협약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의무를 비롯하여 본 조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대주단과 합의하는 양식으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에 제공한다.

제 87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별첨18(통지 및 문서송달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협약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8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당해주무관청의 협조)

- ①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본 사업 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재금융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당해주무관청은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통합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협조해 주며,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당해주무관청은 사업기간중 대주단의 대출 여부 및 대출조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유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은행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당해주무관청은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2.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률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7.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⑤ 당해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 89 조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들은 본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 90 조 (완전합의)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 91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92 조 (문서의 우선순위)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본 협약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93 조 (해석)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② 단수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상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인,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 9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95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96 조 (경과조치)

관계법규 및 주무관청들의 행정입법 등 제반행정조치가 본 사업완료 이전에 개정되는 경우, 주무관청들과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및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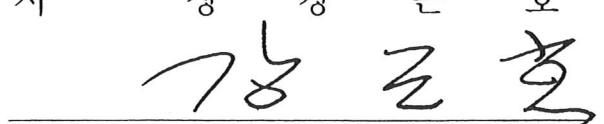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8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4. 0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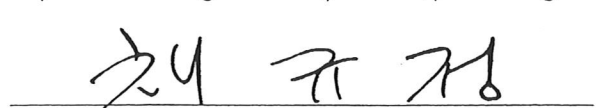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라북도
 도지사 강현욱




전라북도 군산시
 시장 강근호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 채규정



전라북도장 정유 한
시업 () 음성 병

전라북도장 김곽 각
시회 인 () 재인 리

전라북도수 완최 최
군일 일 () 주총 동

전라북도수 부김 안중 군규
() 안중 군규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
대표자 신 () 신